

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(방침 통보): 30일
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

신청인	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)	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
	주소	(전화번호:)

어업 허가 (면허)에 관한 사항	허가(면허)번호		허가(면허)기간	
	어업의	종류	명칭	어구의 규모·내용연수
	종류·명칭 및			
	어구의 규모·			
	내용연수			
	※ 이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			
	주조업구역			

어선의 제원	어선의 명칭			
	어선번호		진수연월일	
	총톤수		선체의 재질	
	기관의 종류	[]육상디젤, []디젤	기관의 마력	

그 밖의 사항	승선원 수	
------------	-------	--

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
시·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1. 어업허가(면허)증 사본 1부 2.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.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폐업지원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확인

본인은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·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「수산업법」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, 폐업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에 동의합니다.

확인 및 동의자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